

영등포구의회
제13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3. 31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3. 20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2~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「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」(도로행정담당관-4500)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, 이첩된 사항은 심의·의결한 것으로
같음함(안 제2조 제1항)
- 사업자(행위자)의 청문(진술)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
사실 조사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 될 경우
교통불편 민원신고 요건의 불비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(안 제2조 제2항)

■ 관련법규

- 「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」(서울특별시 도로행정-4500)이
시달됨에 따라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개정 준비중임.

■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
단축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
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
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「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」

(도로행정담당관 - 4500)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1항의 단서조항 추가와 제2항을 신설(서울특별시에서 직접조사 이첩사항은 심의·의결로 같음하고 행위자가 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 될 경우, 교통민원 신고요건 불비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)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3. 31.

보 고 자 : 이 남 식